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공동매입의 대표사업자는 각 구성원에게 부동산 용역대금의 분배비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함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는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들이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사전법규부가-1233, 2023.04.07

▌질 의

- 업무협약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용역을 공급받고 협의체의 대표사가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 협의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용역 수행기관에 대금을 지급하고 협의체의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 협의체의 대표사가 협의체의 구성원이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협의체의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신청법인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상풍력터빈 전용 설치선 확보 방안'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신청법인이 협의체의 대표사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들이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함

사전법규법인-646, 2023.01.26

▌질 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8, 2023.1.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8, 2023. 1. 18.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설립당시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후 자본시장법의 요건을 갖추어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법규법인-1575, 2023.03.09

▌질 의

•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법인이,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따라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설립당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2021. 4. 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내국법인이 같은 법 같은 조(2021.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전환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RP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RP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서면법규법인-6591, 2023.03.10

▌질 의

•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의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4, 2023.03.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4, 2023.03.06.

[질의내용]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의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매도인이 수령한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아님

(제2안) 매도인이 수령한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공사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제과-453, 2022.10.11

▌질 의

•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귀 공사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